

# 경상남도 함양군-대한민국 ROTC중앙회 업 무 협 약 서

경상남도 함양군(이하 “함양군” 이라 한다.)과 대한민국ROTC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 라 한다.)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 【목적】** 함양군과 중앙회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【협력사업의 범위】** 중앙회와 함양군은 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지원한다.

- 가.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봉사활동 및 농촌사랑운동 실천
- 나. 함양군의 문화, 관광, 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
- 다. 중앙회 및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함양군 유치 및 행사추진에 따른 함양군의 행정편의 제공
- 라. “ROTC 쇼핑몰” 에 함양군 농산물 입점
- 마.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안전먹거리 제공
- 바. 기업유치 및 경제발전을 위한 행정적 편의제공 및 정보제공
- 사. 주소득 작물(사과, 양파, 산양삼 등) 상품 최저가 판매
- 아. ROTC 회원 함양군 귀농, 귀촌 또는 이주 시 정착 지원
- 자.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

**제3조 【협약의 효력】**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5년간 유지된다. 다만 일방이 협약 만료 6개월 전에 협약을 종료하려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명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조건하에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.

**제4조 【보안】** 본 협약체결 과정에서 교환되는 비밀정보, 문서는 양 기관 간에 적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외부유출을 엄격히 제한하여야하며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할 경우에는 상대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
**제5조 【기타】** 함양군과 중앙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시 관련 조직으로 하여금 본 협약서를 기준으로 구체적 협력분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을 대표해 함양군수와 대한민국 ROTC중앙회가 각각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 년 7 월 23 일



함 양 군  
군 수



대한민국 ROTC중앙회  
회 장